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696호

의 안 명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의 결 일 2023. 8. 7.

주 문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
교통부장관, 한국부동산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8월 7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운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회



[별 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 · 투명성 제고

2023. 8.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개요	1
II. 제도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심사관련 규정 불일치에 따른 [지자체] 심사업무 혼선 방지	4
2.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적용에 따른 이행 실효성 제고	9
3.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기능 개선·정비및사용자 교육 확대·강화	10
IV. 조치사항	11
【참고】 관련 법령 등	12



I.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 과제발굴 : 권익위·부산교육청 간 협업 간담회(22.12.12), 부산교육감 제도개선 건의*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 공정성 확보 필요

□ 추진 배경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2014.6.5.)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 설계자를 선정할 때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 1월 이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설계공모 대상 확대
 -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등 품격 향상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방식(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
※ 설계비 예산 규모는 약 7,028억 원(20~22년)
- 지난 5년간 설계공모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설계공모는 전체의 50.8%(총 4,017건 중 2,040건)을 차지
- (18년) 438건 → (19년) 589건 → (20년) 946건 → (21년) 978건 → (22년) 1,065건
-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심사위원 금품·향응 제공, 전관 특혜 등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의 설문 조사결과(2022.4월), 설계공모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로 확인
 - ※ (건축사 등 공모 참여자) 금권 개입 등 불만족 의견이 전체의 58%
- 이에,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 심사위원 심사충량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23. 3 ~ 5월
- 기관협의 및 위원회 상정: '23. 5 ~ 7월

II. 제도 현황

□ 설계공모 제도

- (공모대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발주는 설계공모 적용 의무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공장, 창고, 축사,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소, 묘지, 장례시설 등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

- (공모방식) 총 6가지 방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 설계공모’를 적용하며, 공모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을 적용

< 건축설계 공모방식 >

구분	적용대상	비고
일반 설계공모	·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 · 공모작이 많은 경우 1, 2차 심사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2단계 설계공모	· 1단계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등에 심사 후 2차 공모에 참여할 설계자 선정하는 방식 · 2차 공모에 좀 더 구체적인 공모안을 받아 최종 당선작 선정(공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음, 4개월 이상)	대규모사업
제안공모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아이디어,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	긴급사업
간이공모	· 소규모 사업(설계비 2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방식	소규모사업
제한공모	·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방식	신진/지역 건축사 등 육성 목적
지명공모	· 발주기관 등이 지명한 설계자만 참여 가능한 방식	우수한 작품 필요

- (공모절차 및 기간*) 공모방식별 공모기간(공고일부터 제출마감일까지)을 달리하여 일반 설계공모의 경우, 당선작 선정까지 약 6개월 소요, 제안공모의 경우에는 약 4개월 소요

* 일반설계공모: 90일 이상(최소 45일 이상), 2단계 설계공모: 90일 이상(최소 50일 이상), 간이공모: 30일 이상, 제안공모: 20일 이상

< 설계공모 추진 절차 >

사업준비	⇒	공모기간	⇒	심사	⇒	발표 및 전시
▶공모방식 결정 ▶설계 지침서 작성 ▶운영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선정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공모 공고 ▶현장설명회 ▶질의응답 ▶심사위원 사전간담회 ▶공모안 접수		▶기술검토 ▶서면심사 ▶PT발표 심사 ▶토론,투표,채점,혼합 등		▶결과 발표 ▶전시 시상식 ▶당선자 계약 ▶입선자 보상
1.5~2 개월		공모방식별 1~3 개월		0.5 개월		0.5 개월

- (공모현황)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설계비 1억 원 이상)된 이후 공모건수 급증(19년 589건→20년 946건, 증가율 60.6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이 전체 공모 건수의 50.8%를 차지함.

< 연도별 공모 건 수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합계
공고 건수	439	589	946	978	1,065	4,017
증가율(%)		34.16%	60.61%	3.38%	8.89%	

< 기관유형별 공모 건 수>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가기관	30	37	55	54	93	269(6.7%)
지방자치단체	171	284	615	568	402	2,040(50.8%)
교육기관	126	124	146	208	349	953(23.7%)
공공기관 등	112	144	130	148	221	755(18.8%)

(출처: 조달정보포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¹⁾ 현황 종합)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발주기관 등은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을 입력, 공개해야 함(「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심사관련 규정 불일치에 따른 (지자체) 심사업무 혼선 방지

[행정안전부]

□ 문제점

- 국토부는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 확립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심사 진행 공개, 심사위원 제척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을 고시·운영 중
 - 국가기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행하도록 규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7조(세부기준 등))
 - 하지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53호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과 위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의 심사 관련 주요 규정이 불일치하여 지자체 심사업무에 혼선²⁾ 발생
 -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심사위원 자료 배포 시기,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공개 여부, 심사위원 제척 사유 등 주요 규정이 서로 상이(아래 ‘설계공모 심사관련 주요 규정 비교표’ 참고).
- ※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우정사업조달센터 예규) 등의 설계공모 심사 관련 주요 규정은 국토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과 동일

2)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4인’으로 구성하거나, 심사위원 명단, 심사 진행 과정을 ‘비공개’로 심사

<설계공모 심사관련 주요규정 비교표>

구 분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5~9인으로 구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으로 구성	-10인 이내로 구성
심사위원 자료 배포 시기	-심사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	-심사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 전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공개 여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며, 심사 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 으로 하며, 심사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가능)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적용	-각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발주기관 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참여 현황을 확인해야 함	-해당 내용 부재
심사위원 제척 사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좌동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 관계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좌동
--	--	---

□ 개선방향

- 위 <설계공모 심사관련 주요규정 비교표> 중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심사위원 심사 총량제 적용),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 추진
 - 그 밖에 관련 규정간 불일치하는 내용(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심사위원 자료 배포 시기, 심사위원회 심사진행 공개 여부, 심사위원 제척 사유)은 발주기관에 따라 규정을 달리 운영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 심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개정(안) 예시 >

①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현 행	개 정(안)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생략>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u>10인 이내</u> 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현행과 같음> 나. ----- ----- <u>5~9인</u> ----- -----, 다만, 발주기관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자료 배포 시기, ③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공개 여부

현 행	개 정(안)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u>최소 3일 전까지</u>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나. <생략> 다.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u>비공개</u> 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 ----- ----- <u>최소 5일 전까지</u> ----- ----- ----- 나. <현행과 같음> 다. ----- <u>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u> , ----- -----, <단서 삭제>

④ 심사위원 제척 사유

현 행	개 정(안)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 기피, 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 5)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u>심사위원이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u>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u>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6) <신설> 7) <신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 기피, 회피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심사위원이 <u>최근 2년 이내</u>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5)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6)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7)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적용에 따른 이행 실효성 제고

*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로 제한

[국토교통부]

□ 문제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공개된 심사 관련 정보(심사일, 심사위원 명단 등)가 부정확하여 각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현황 확인 곤란
- 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 위촉 시, 심사위원별 서면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확인 제한
- ※ 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 ※ 일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자체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기준*을 적용, 운영
 -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원 임기 내 4회 초과 제한, (한국전력) 1년 내 재선정 제외, (한국도로공사) 최근 2년 내 2회 참석 제한 등

□ 개선방향

- 발주기관 등이 각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심사총량제 확인 공통서식’ (심사일 기준 1년간 심사 참여내역 기재) 마련 등 심사 참여현황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심사총량제 적용에 따른 이행 실효성 제고 필요
- ⇒ 국토부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별표 ‘심사총량제 확인서’ 서식 신설

□ 문제점

- 발주기관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정보 입력 시, 시스템상 문제로 일부 정보 입력·사용 제한
 - 심사위원(예비 심사위원 포함) 명단 입력 시, 일정 인원(5~9인)만 입력 가능, 심사위원 내부·외부·예비 등의 구분 입력 제한, 공모지 위치 주소(도로명, 지번이 없는 경우) 입력 제한 등
- ※ 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 명단 등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 공개하도록 규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 발주기관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한 심사위원 명단 등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불일치하여 설계공모 현황 관리가 곤란하고, 설계공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교육 부재
 - 공모 공고/심사 결과 미등록, 공모 공고 등록 후 심사 결과 미등록, 심사위원 불참에 따른 위원 변경 등 수정사항 미입력, 조달청에 의뢰한 공모사업의 경우, 공고기관명을 ‘조달청(수요기관명)’이 아닌 수요기관명으로 오입력 등

□ 개선방향

- 심사위원 명단, 공모지 주소 입력 등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기능 개선·정비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력 방법·절차,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이버 교육강좌 신설, ‘공공건축 설계 공모 매뉴얼’ 수정·보완 등 사용자 교육 확대·강화 필요
- ⇒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기능 개선·정비 및 사이버 교육강좌 개설 등 사용자 교육 확대·강화

IV. 조치사항

□ 조치내용 및 조치대상

세부과제명	조치내용	조치대상
① 심사관련 규정 불일치에 따른 (지자체) 심사 업무 혼선 방지	○ 설계공모 심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정 정비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 기준' 개정 ①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② 심사위원 자료 배포 시기, ③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공개 여부, ④ 심사위원 제척 사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② 심사위원 심사 총량제 적용에 따른 이행 실효성 제고	○ 발주기관 등이 각 심사위원의 심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관련 확인 서식 규정에 반영 ⇒ 국토부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별표 '심사총량제 확인서' 공통서식 신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③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기능 개선·정비 및 사용자교육 확대 강화	○ 심사위원 명단, 공모지 주소 등 입력 기능 개선 및 설계공모 업무담당자 대상 사용자 교육 확대 강화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기능 개선·정비 및 사이버 교육강좌 개설 등 사용자 교육 확대·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 조치기한 : '24. 1월

○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 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2. 17.>
- ④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7.>
- 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2.>
1.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2.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17., 2020. 9. 22.>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 시행 2023. 4.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 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9.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0.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1.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3.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 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발주기관 등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5.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 ②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위촉·활용하는 발주기관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발주기관

- ③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제 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 등은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 공고 또는 설계 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자. 생략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아. 생략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예규 제253호, 2023.6.29. 일부개정)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 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5. 심사위원회의 개최

-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 다.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 기피, 회피

- 가. 생략
-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지침 제3808호, 2023. 5. 26., 일부개정]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건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와 수요기관 추천 심사위원을 활용하여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21조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을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운영하는 교섭·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은 타 기관 심사를 포함해 심사일 기준 월 2회, 연12회를 초과해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심사참여 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제24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25조(심사위원 사전검토) ① 계약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71조(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나라장터 등에 공개 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공개 한다.

1.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2. ~ 5. 생략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참관신청자에게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진행 과정의 실시간 공개가 곤란한 경우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진행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6] 서식의 요청서를 접수받아 제3항에 따라 녹화 또는 녹음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예규 제33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규모 및 종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22조(심사위원 사전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심사방법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 전 과정에 대해 조달센터 관리부서의 감사담당을 심사위원회에 입회하게 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정 본 입 니 다 .

2023. 8. 8.

국 민 권 의 위 원



A C B C